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588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03월 31일

발 의 자: 김 경, 김기덕, 민병주,
박승진, 송재혁, 아이수루,
왕정순, 유정인, 유정희,
이용균, 임규호, 한 신,
홍국표 의원(13명)

1. 제안이유

- 불요불급하거나 연 개최 횟수가 기준보다 미달하면 위원회를 상설이 아닌 비상설로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이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개최 실적이 미비하여 조직담당관으로부터 매년 위원회 비상설화를 권고 받은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심의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기 위해 발의함.

2. 주요내용

- 가. 위원회의 운영을 비상설로 전환하기 위한 필요 사항 개정(안 제14조 제1항 및 제3항)
- 나. 위원회 비상설에 따른 실무위원회 삭제 및 위원회 관련 조례 준용(안 제14조제5항 및 제6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둔다”를 “둘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진흥지구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심의 안건이 발생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구성하여 소집한다.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7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7항) 본문 중 “위원 및 실무위원회 위원”을 “위원”으로, “안에서”를 “안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이 조례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흥지구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시 장은 진흥지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 여 서울특별시 산업·특정개발 진흥지구심의위원회(이하 “진흥 지구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 다. 1. ~ 5. (생략) ② (생략) ③ <u>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과 의회 의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u> ④ <u>진흥지구심의위원회의 회의 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u> ⑤ (생략) ⑥ <u>진흥지구심의위원회의 원활 한 심의 등을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 등 7인 이내로 구성된</u>	제14조(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 ----- ----- ----- ----- ----- <u>둘 수</u> <u>있다.</u> 1.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u>진흥지구심의위원회의 회의 는 심의 안건이 발생하거나, 시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구성하여 소집한다.</u> <u><삭 제></u> ④ (현행 제5항과 같음) ⑥ <u>이 조례와 「서울특별시 각 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u>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 설>

⑦ 시장은 진흥지구심의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 및 실무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⑧ 제6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흥지구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진흥지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⑨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진흥지구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
----- 위원-----

---- 안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 <단서 삭제>

<삭 제>

<삭 제>

대행한다.

⑩ · ⑪ (생략)

⑧ · ⑨ (현행 제10항 및 제11항
과 같음)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서울특별시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심의위원회의 비상설화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것으로 서울시 재정수입 순감소나 재정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 참고로 위원회 운영 시 소요되는 비용변화(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등)를 검토¹⁾하였으나 서울시 관련 부서(경제실 산업입지과) 문의 및 각종 정보확인 결과 별다른 추가재정소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주 병 준

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

추 계 분 석 관 손 제 승

☎ 02-2180-7953

e-mail : smclt22@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

1) [연간 정례적 운영비 소요 → 안전량에 따른 운영비 소요] 서울시 관련부서(경제실 산업입지과) 문의결과 최근 3년간 위원회 개최는 평균 2회(2024년 2회, 2023년 3회, 2022년 1회) 정도로 향후 안전 발생 빈도가 지금과 같은 추이일 경우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도 이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 다만 향후 진흥지구 관련된 사항심의 요구가 늘어나 안전이 증가할 경우 추가재정소요 발생의 여지는 있으나 현재로서는 안전 증가를 판단할 만한 합리적인 요소가 없어 고려사항에서 제외함